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94

제안연월일 : 2016년 4월 26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, 별표2에 상징물 연혁을 신설함.

2. 주요골자

○ 시민참여단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상징물 관련사업과 분리하여 규정함(안 제6조제3호 삭제 및 안 제6조의2 신설).

○ 조 제목과 문장을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함(안 부칙 제2조).

○ 상징물의 연혁을 신설함(안 별표2제4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.”를 “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시민참여단)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제2조의 제목 “(소급효)”를 “(경과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추가 변경하는 경우”를 “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”로 한다.

별표2 중 “4. 연혁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연혁

구 분	선정 연도
Hi Seoul	2002
Hi Seoul SOUL OF ASIA	2006
HAECHI SEOUL	2008

수정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 (생략)	제6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6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	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,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.	②---------- ---------- --있으며,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.
<신설>	③ 제2항의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제>
	<신설>	제6조의2(시민참여단)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부칙 제2조(소급효)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.	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.
[별표 2] 상징물의 종류(제3조제2호 관련) 1. ~3. (생략)	[별표 2] 상징물의 종류(제3조제2호 관련) 1. ~3. (현행과 같음)	[별표 2] 상징물의 종류(제3조제2호 관련)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	<신설>	4. 연혁 구 분 / 선정 연도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	2002 2006 2008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,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시민참여단)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2 중 “4.연혁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연혁

구 분	선정 연도
Hi Seoul	2002
Hi Seoul SOUL OF ASIA	2006
HAECHI SEOUL	2008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6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 (생략)	제6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	②----------있으며,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.
<신설>	제6조의2(시민참여단)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<신설>	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.
[별표 2] 상징물의 종류(제3조제2호 관련) 1. ~3. (생략)	[별표 2] 상징물의 종류(제3조제2호 관련) 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연혁

구 분	선정 연도
Hi Seoul	2002
Hi Seoul Soul of Asia	2006
HAECHI SEOUL	2008